

###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기준(제18조 관련)

지원 유형	지급 기준	비고						
정규직 전환 지원	1. 정규직으로 전환(또는 직접 고용)한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최대 1년간 지원.	○ (지원인원)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인원은 최초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수의 30%(소수점 이하 버림,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)를 한도로 하되,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- 지원금 신청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장의 경우는 회사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매월 말 전체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%(소수점 이하 버림,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)를 한도로 하되,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-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지원한도가 최초로 설정된 날 또는 다시 설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지원한도를 다시 설정하되, 기존 지원한도보다 적을 경우에는 기존 지원한도에 따름 -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위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○ (신청·지급 주기) 3개월	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3%;">지원대상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1개월 지급액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연간 지원총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30인 미만 기업</td> <td>20만원</td> <td>240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지원대상	1개월 지급액	연간 지원총액	30인 미만 기업	20만원	240만원
	지원대상		1개월 지급액	연간 지원총액				
	30인 미만 기업		20만원	240만원				
*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해당 사업(장) 전체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(사업계획서 제출년도 신설사업장의 경우에는 제출일 전달 말일 기준으로 판단)								
2. 정규직으로 전환(또는 직접 고용)한 근로자 1인당 장려금을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최대 1년간 지원			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3%;">지원대상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1개월 지급액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연간 지원총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30인 미만 기업</td> <td>40만원</td> <td>480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지원대상	1개월 지급액	연간 지원총액	30인 미만 기업	40만원	480만원	
지원대상	1개월 지급액	연간 지원총액						
30인 미만 기업	40만원	480만원						

		<p>단위로 신청·지급함</p> <p>※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대상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</p>												
<p>위라벨일자리 장려금 (소정근로시간 단축제)</p>	<p>1.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감소액 보전금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기준에 따라 최대 1년간 지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40px;"> <thead> <tr> <th>지원대상</th> <th>1개월 지급액</th> <th>최대 지급한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</td> <td>20만원</td> <td>240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음</p> <p>2.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장려금을 아래의 기준에 따라 최대 1년간 지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40px;"> <thead> <tr> <th>지원대상</th> <th>1개월 지급액</th> <th>최대 지급한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</td> <td>30만원</td> <td>360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지원대상	1개월 지급액	최대 지급한도	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	20만원	240만원	지원대상	1개월 지급액	최대 지급한도	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	30만원	360만원	<p>○ (지원기간)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기간에 대하여 지원. 다만 최소 1개월(임신 2주) 이상 활용해야함.</p> <p>○ (지원인원) 1년간 지원인원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%(소수점 이하 버림,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)를 한도로 하고 3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최초 지원금 신청일 이후 지원대상 근로자를 변경할 수 없음</p> <p>○ (지원금 산정) 지원금액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산정 단위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, 활용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 이르지 못하는 달은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</p> <p>○ (신청·지급 주기) 3개월 단위로 신청·지급함</p>
지원대상	1개월 지급액	최대 지급한도												
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	20만원	240만원												
지원대상	1개월 지급액	최대 지급한도												
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	30만원	360만원												
<p>위라벨일자리 장려금</p>	<p>1. 위라벨일자리장려금(실근로시간단축제) 지원 인원 1인당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최대 1년간</p>	<p>○ (지원기간) 실근로시간 단</p>												

(실근로시간 단축제)

지원

지원대상	1개월 지급액	최대 지급한도
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	30만원	360만원

- ① 지원 인원: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%(최대 100명 한도). 다만,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최대 3명 지원
  - ② 지원 대상 근로자: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단축 시행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중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
  - ③ 실근로단축시간 산정방식: (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) - (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)
    - \* 소수점 이하 버림
    - \* 주 평균 실근로시간은 월평균 근로시간을 4.3주(365일/12개월/7일)로 나눔
    - \* ‘단축 시행 전 3개월’ 이라 함은 ‘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’ 을 의미
    - \* 실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시간을 합한 시간을 의미하고, 1일 단위 실근로시간 산정 방법은 전자·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한 출퇴근 기록지의 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빼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(단, 휴게시간은 제외)
  - ③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산정방식 = (시행 단위 전체 피보험자의 실근로시간) ÷ (시행 단위 전체 피보험자수)
    - \* 피보험자수 산정시 정규직, 기간제 등 근로형태, 내·외국인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(사업장)의 산정 대상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가진 근로자수를 의미(단, 예술인·노무제공자 제외)
2.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는

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

- (지원금 산정) 지원금액은 월 단위로 산정
  - (신청·지급 주기) 3개월 단위로 신청·지급함
  - ※ ‘26.1.1. 이후 워라밸일 자리장려금(실근로시간단축제) 사업에 대한 신규 지원 종료
- (다만, ‘25.12.31. 이전 참여 신청서 제출 사업장으로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회차 지원금 및 잔여 지원분 지원 가능)

	<p>지원 제외</p> <p>3. 지원 대상 근로자 중 특정인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감소 되지 않았거나 증가한 경우라도 법정 근로시간 이내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</p> <p>4. 단축 전·후의 실근로시간은 「근로기준법」 한도 준수 필요</p> <p>* 3개월 단위로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장려금은 우선 지급하고, 추후 연장근로 위반 등 「근로기준법」 위반 사실 확인시 해당 사업장의 단축 장려금 전체 부지급(기 지원액 반환, 부정수급 등 검토)</p> <p>5.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전자기계식 방식에 의한 근로자의 출퇴근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기계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조치 기준</p> <p>*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기록이 없는 날이 ‘월 3일’ 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, 해당자는 해당 월의 실근로시간 산정시 제외하고, 해당 월의 장려금 지원 대상 인원수에서도 제외함</p> <p>*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기계 고장 등으로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지 못한 기간이 해당 사업장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연속 10일(고장일 당일 포함) 초과하거나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중 20일을 초과할 경우 해당 3개월은 지원 불가</p>	
<p>위라벨일자리 장려금 (위라벨+4.5 프로젝트)</p>	<p>1. 지원 대상 근로자: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감소 없이 소정근로시간 단축, 유급휴무 부여 등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 중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로서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자</p> <p>* 실근로시간이란, 소정근로시간에 연장 및 휴일근로 시간 등을 합한 총 근로시간을 말함</p> <p>2. 규모별 지원액 및 지원한도(차등): 사업 참여 신청</p>	<p>○ (지원기간)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1년*</p> <p>* 다만,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이 특정 월의 초일인 경우, 당해 도입월부터 1년 지원</p> <p>○ (지원금 산정) 지원금액은 월 단위로 산정</p>

	<p>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월말 피보험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</p> <p>① (20인 이상~50인 미만) 도입 유형*에 따라 적용 근로자 1인당 월 30~5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</p> <p>* (부분도입) 매월 단위 주 평균 2시간 미만 단축한 경우, 1인당 월 30만원 지원 (전면도입) 매월 단위 주 평균 2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, 1인당 월 50만원 지원</p> <p>② (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) 도입 유형*에 따라 적용 근로자 1인당 월 20~4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(지원한도 100명)</p> <p>* (부분도입) 매월 단위 주 평균 2시간 미만 단축한 경우, 1인당 월 20만원 지원 (전면도입) 매월 단위 주 평균 2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, 1인당 월 40만원 지원</p> <p>※ 실근로시간 단축 산정방식: (사업참여 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) - (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이 속한 달의 직후 매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*)</p> <p>*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이 특정 월의 초일인 경우, 당해 도입월부터 매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으로 산정</p> <p>③ (우대지원) 생명·안전 관련 업종, 장시간 근로 사업장, 교대제 개편 추진 사업장, 비수도권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규모별 지원액(①,② 참고)에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</p> <p>* (생명·안전) 철도, 병원, 항공, 수도, 전기, 가스, 혈액공급, 통신 등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</p> <p>* (장시간 노동) 직전 3개 연도 내에 「근로기준법」 제53조 위반 이력이 있거나, 상시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던 사업장</p> <p>* (교대제 개편) 직전 3개 연도 내에 교대제 개편 이력이 있거나 교대제 개편을 예정 중인 사업장</p> <p>④ (지원기업의 예외적 확대) 생명·안전 업종,</p>	<p>※ 추가 지원의 경우 3개월 단위로 산정</p> <p>○ (신청·지급 주기) 3개월 단위로 신청·지급함</p>
--	--	--

장시간 노동, 교대제 개편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규모기업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(단, 우대지원은 적용하지 않음)

⑤ (추가 지원) 소정근로시간 단축, 유급휴무 부여 등 실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대비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이 속한 달의 직후 3개월간 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한도 내에서 월 60~8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

\*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이 특정 월의 초일인 경우, 당해 도입월부터 직후 3개월간 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

\* (20인 이상~50인 미만) 월 80만원

\* (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) 월 60만원

\* 지원한도 : (실근로시간 단축 적용 인원 × 단축시간) / (40시간 - 단축시간)

### 3. 주 평균 실근로시간의 산정

① 실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연장, 휴일근로시간 등을 합산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 
- (산정방식) 주 평균 실근로시간 = 해당월 평균 실근로시간 / (해당 월의 총일수 / 7일)

② 다만, 실근로시간 산정시 공휴일, 유급휴가 등이 실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실근로시간 단축 판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'보정후 실근로시간'을 기준으로 산정

- (보정대상) 근로기준법,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된 유급휴일(노동절, 휴일의 대체를 포함), 유급휴가 등으로 인한 시간을 보정대상으로 하여 실근로시간에 가산

- (산정방식) 주 평균 실근로시간 = (해당 월 평균 실근로시간 + 보정대상시간) / (해당 월의 총일수 / 7일)

### 4.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 전·후 「근로기준법」 제 53조(연장근로의 제한)를 준수하여야 하며, 동 조

	<p>항 위반 사실 확인 시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며, 기 지원액을 반환하여야 함</p>													
<p>일·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</p>	<p>1.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에 한하여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최대 1년간 지원하되 시차출퇴근제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427 539 1031 1097"> <thead> <tr> <th>유형</th> <th>1개월 지급액</th> <th>최대 지급한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재택·원격근무제</td> <td>20만원 (월 4일 이상 활용)</td> <td>240만원</td> </tr> <tr> <td>시차출퇴근제</td> <td>20만원 (월 4일 이상 활용)</td> <td>240만원</td> </tr> <tr> <td>선택근무제</td> <td>30만원 (월 6시간 이상 단축 및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)</td> <td>360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원</p> <p>* 선택근무제는 월 5회 이상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경우,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</p> <p>**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·원격·선택근무는 2배 지원</p> <p>*** 육아기는 자녀의 연령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의미하며 '25.1.1 참여신청서 제출분부터 적용</p> <p>2. 일·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금은 제6장의 규정에 따라 지급</p>	유형	1개월 지급액	최대 지급한도	재택·원격근무제	20만원 (월 4일 이상 활용)	240만원	시차출퇴근제	20만원 (월 4일 이상 활용)	240만원	선택근무제	30만원 (월 6시간 이상 단축 및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)	360만원	<p>○ (지원기간) 근로자당 유연근무 활용 계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실제 유연근무를 활용한 기간에 대하여 지원</p> <p>※ 지원 시작 이후 유연근무를 활용하지 않은 기간은 총 지원기간 1년 범위 내에 산입</p> <p>○ (지원인원) 1년간 지원인원은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%(소수점 이하 버림,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)를 한도로 하고 70명을 초과할 수 없음.</p> <p>○ (지원금 산정) 지원금액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산정 단위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</p> <p>○ (신청·지급 주기) 3개월 단위로 신청·지급함</p>
유형	1개월 지급액	최대 지급한도												
재택·원격근무제	20만원 (월 4일 이상 활용)	240만원												
시차출퇴근제	20만원 (월 4일 이상 활용)	240만원												
선택근무제	30만원 (월 6시간 이상 단축 및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)	360만원												